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5.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 차

1 선거관리 및 절차사무 관련

1. 임박한 재보궐선거에 대비하여 사전투표소 불법촬영장비 설치 등 부정 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거관리할 것 1

2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관련

- 2-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와는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할 것 2
- 2-2.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뢰나 단속보다 사전에 선거법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우선할 것 3
- 2-3. 사전투표에 있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투표소 부근 반경 100m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것 4
- 2-4. 제1심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내에, 제2·3심은 전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원 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 5
- 2-5.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 인사 교대 주기 단축과 선거 제도 및 고발 절차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6
- 2-6. 선거공보 및 벽보 홍보물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의 확인과 위반사항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 7
- 2-7.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선거 지원단을 구성할 때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8

3

정치자금 관련

- 3-1. 정당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보전금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해당 보전금을 반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 9
- 3-2.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액수가 약 190억원에 달하므로 더욱 철저한 환수와 미납자 공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10
- 3-3.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거비용 보전금이 35억 3,8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조치를 취할 것 12

4

제도개선 관련

- 4-1.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할 것 13
- 4-2.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14
- 4-3.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관련,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15

5

선거여론조사 및 선거방송토론 등

- 5-1.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6
- 5-2.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17

5-3. 선거여론조사의 품질과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5-4.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론조사 세부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것	19
5-5.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고 오염된 조사결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RDD조사 DB 선관위 제공 등)을 마련할 것	20
5-6.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임기 및 자문 업무 관련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1
5-7.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관위가 후보를 한 명만 초청해 대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2
5-8. 공직선거 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23
5-9.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강력히 제재할 것	24

6 조직·인사운영 관련

6-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한 명이 안내와 지도, 수사와 고발을 모두 담당하는 조직 및 구조를 개선할 것	25
6-2.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조직·인사 개선 추진기구에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할 것	26
6-3. 인터넷심의위원회, 방송토론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연임 및 겸직 제한 등)할 것	27

- 6-4.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직전에 휴직을 하는 현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29
- 6-5.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개방직화 하려는 것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신중히 검토할 것 30

7

기 타

- 7-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겸직허가 실태조사 관련 규정의 도입과 직원들에 대한 겸직현황을 조사할 것 31
- 7-2.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할 것 32
- 7-3. 선거관리위원회 국외 출장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가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므로 국외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전 출장 보고서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33

1-1. 임박한 재보궐선거에 대비하여 사전투표소 불법촬영장비 설치 등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거관리할 것

- 재·보궐선거 관리지침 및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을 개정하여 사전 투표소 설비 시 입구 등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 항목에 추가하였음.
-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사전 투표소 예정장소의 출입문 폐쇄, 잠금장치 철거 등 보안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에 경비협조를 요청하여 유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참고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사전)투·개표소에서 불법 촬영장비 설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 향후에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투·개표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2-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할 것

-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 바, 이와 별개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2-2.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뢰나 단속보다 사전에 선거법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우선할 것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위법행위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공문발송, 방문 안내 및 선거법 교육 등 안내 대상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활동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전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안내 및 시정 조치로 준법선거를 유도하고 있음.

2-3. 사전투표에 있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투표소 부근 반경 100m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것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는 사전투표소의 출입구를 기점으로 직경(직선) 100미터를 의미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100m 이내에서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일 당일 직원,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시 안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법 규정상 거리와 실제 물리적 거리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의 평온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에 각별히 유의하겠음.

2-4. 제1심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내에, 제2·3심은 전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원 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다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기관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진술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있음.

2-5.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 인사 교대 주기 단축과 선거 제도 및 고발 절차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인사교대 주기 단축]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상 필수보직기간은 3년이나 육아, 원거리 근무에 따른 고충 등 사유로 통상 2년 정도 근무 후 전보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 보직 시 직무요건,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치하되, 일정 기간을 주기로 순환보직하도록 하고 있음.

[선거 제도 및 고발절차 보완 대책]

- 중앙위원회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수준을 결정할 때 조사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문답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수준의 정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향후에도 구·시·군위원회와 시·도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가 담당해야 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하급위원회 업무 수행에 대한 상급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방·단속활동의 공정성 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6. 선거공보 및 벽보 홍보물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의 확인과 위반사항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

-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작성 주체자는 후보자로,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심사조서를 통한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 학력 관련 서류제출 시 최종학력증명서만을 제출하므로 그 이하의 학력을 선거공보·선거벽보 등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실무상 즉시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입후보안내 설명회, 선거사무안내 책자 배부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후보자등록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해 언론기사, 후보자 홈페이지 등 확인·점검을 병행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공보에 대한 이의제기(제64조·제65조) 및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제110조의2)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될 경우 이의제기자 등으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받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학력·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명서류 등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위반 경중을 고려하여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2-7.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할 때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중앙선관위 훈령)에 따라 3인 이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치는 등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면접심사 시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항목을 평정요소로 포함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또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자체교육과 선거연수원 사이버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확한 선거법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1. 정당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보전금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해당 보전금을 반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당이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사례는 없음.
- 향후 해당 사례 발생 시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3-2.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액수가 약 190억원에 달하므로 더욱 철저한 환수와 미납자 공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우리 위원회의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 미반환 시 세무서에 징수 위탁하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미반환금이 발생하며, 매 선거시마다 반환대상이 신규 발생하여 미반환금이 누적되고 있음.
- 미반환금 환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과 협력을 통한 징수 재위탁, 소멸시효연장 재판청구, 재출마자 중 보전대상자에 대한 지급예정 보전비용 상계 처리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수행 중임.
- 실질적인 반환율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바, 당선무효형의 선거범죄로 기소·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등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2021. 5.), 관련 법안 입법 논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임.

〈 참고사항 〉

□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3회, 2014. 10. 8., 2016. 8. 25., 2021. 5. 25.)

- 선거비용 미반환자 인적사항 공개
- 선관위 고발 또는 사직기관 기소 시 판결 확정까지 선거비용 등 보전 유예
- 지방선거 미반환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처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내용(4건)

- (2024. 9. 23., 김종양 의원안) 기탁금 및 선거비용 미반환자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및 중대한 선거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보전 유예
- (2024. 11. 15., 조은희 의원안)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를 범하여 기소·고발된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유예

- (2024. 11. 27., 주진우 의원안)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반환예정금액을 정당 재산에서 압류 등
- (2025. 2. 26., 나경원 의원안)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및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년으로 직접 규정 등

□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내용(1건)

- ('24. 11. 15., 조은희 의원안) 대선, 비례대표국선의 당선무효형 선고 시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

**3-3.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거비용 보전금이 35억 3,8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조치를 취할 것**

- 우리 위원회는 2019년부터 소멸시효가 임박한 보전비용 미반환
건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을 청구하고 있음.
- 앞으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4-1.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할 것

- 우리 위원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부터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 형태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개표 시 수검표 절차 추가 도입 등 사전투표 관련 의혹 해소 방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아울러, 전국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열람실을 추가 설치하였고, 17개 시·도 위원회에 열람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사전 신청 없이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에 대한 공개시연회 행사를 개최하고, 정당·시민 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여 (사전)투표·개표 등 선거 전 과정을 참관하게 하였으며,
-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사전)투·개표사무원 국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국민만 선거사무관계자로 위촉하도록 조치하였음.
- 향후에도 사전투표 관련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4-2.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차순위 득표자 승계, 재보궐 원인 제공자 보전비용 환수 등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다수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제도 및 헌법상 선거공영제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회가 충분히 공론화 해 주기를 기대함.

4-3.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관련,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광역시 지방의원정수 확대 여부는 지방의원 총정수, 인천광역시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관련 입법 발의 시 면밀히 검토하겠음.

5-1.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단계에서는 선거운동 목적의 여론조사 및 각종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신고서 심사를 수행하고,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는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5대 중대 선거범죄에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행위를 포함하고, 왜곡행위를 중점 관리하여 문제 있는 조사 결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음.
- 앞으로도 사전심사, 모니터링, 위법행위 조치 등 모든 단계에서 선거여론조사 왜곡을 방지하고 왜곡된 결과의 확산을 차단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2.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2024년 불법 선거여론조사 논란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 여론조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2025. 1. 20.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불법 선거여론조사 원인 및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제출하였음.
- 또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급변하는 선거여론조사 환경을 반영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연구 결과에 대해 학계, 언론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대상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정책연구용역 주요 내용〉

- 과 제 명: 제21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진단과 개선을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 주요내용: ① 제21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② 조사환경 변화 대응 및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 방안 모색
- 연구기간: 2025. 6. 27. ~ 10. 31.
- 연 구 자: 한국조사연구학회

5-3. 선거여론조사의 품질과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법적 규제 중심의 선거여론조사 관리방식이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 대안으로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및 조사기관 평가제도가 제시된 바 있음.
- 해당 제도는 선거여론조사의 품질 등을 평가하여 유권자나 후보자, 언론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선택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선거여론조사 및 조사기관이 배제되도록 하는 것임.
-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주체,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해당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정책연구용역 주요 내용〉

- 과 제 명: 선거여론조사기관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평가 기준 마련 및 제도화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주요내용: ① 객관적이고 타당한 선거여론조사기관 평가 기준 마련
 - ②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고려한 평가 주체 및 제도화 방안 모색
- 연구기간: 2025. 6. 23. ~ 11. 28.
- 연 구 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5-4.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론조사 세부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것

- 공표용 선거여론조사와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 간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고려하여 비공표용 조사는 조사 결과 등록 의무가 없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으나,
-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비공표 선거여론조사의 관리가 쟁점화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면제 대상 축소, 비공표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 의무화, 비공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원인 및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2025. 1. 20.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향후 관련 협회 등과 소통 시 비공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기관의 자발적 규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제도권 내 규제와 조사 주체들의 자율 규제가 동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5.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고 오염된 조사결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RDD조사 DB 선관위 제공 등)을 마련할 것

- 24년 불법 선거여론조사 논란 이후 선거여론조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 원인 및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2025. 1. 20.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한편, 피조사자 선정(표본 추출)과 관련하여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는 추출틀, 규모, 구축 방법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조사 시간이 현저히 짧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조사가 집중된 경우 등 특이 사항 발견 시에는 원자료를 분석하여 표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음.
-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RDD 조사 표본을 조사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 조사설계 경직화 등 여러 우려를 야기할 수 있고 기술적 한계 역시 존재하여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표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해 보겠음.

〈정책연구용역 주요 내용〉

- 과 제 명: 제21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진단과 개선을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 주요내용: ① 제21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② 조사환경 변화 대응 및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방안 모색
- 연구기간: 2025. 6. 27. ~ 10. 31.
- 연 구 자: 한국조사연구학회

5-6.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임기 및 자문 업무 관련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장기 연임 및 공정성 시비 지적 이후 위원 연임 결정에 재임 기간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여 임기가 만료된 장기 재임(9년) 위원의 후임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였음.
- 또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문위원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의 당원 가입 여부를 자문위원 위촉 단계에서 확인하고 있음.
-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정당 가입 및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해촉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자문위원들과 공유하여 자문 업무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음.

**5-7.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관위가 후보를 한 명만 초청해 대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공직선거법」에 선거방송토론이 도입된 2004년 이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토론 운영 관련 규칙에 따라 후보자토론회를 관리하고 있음.
- 모든 후보자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청 대상 후보자와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로 구분하여 각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음.
- ※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토론회 초청후보자 선정 시, 여론조사 반영 언론기관에 관한 규정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를 준수하였으며, 후보자토론회 시 초청 대상 후보자의 선정범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토론회 제도 개선은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평가하고 공직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토론회 개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관련 논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겠음.

5-8. 공직선거 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및 토론 운영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
- 법과 규칙에 근거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선거방송토론위원으로 구성된 준비소위원회 및 전체 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통해 토론회의 주제, 진행방식 등을 선정하고 공표함.
- 앞으로도 토론회를 주관함에 있어 법과 규칙에 따라 공정히 진행하겠음.

5-9.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강력히 제재할 것

- 현행 「공직선거법」은 우리위원회의 제재조치 이행명령(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등)을 받은 해당 언론사가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고발 규정만 있음.
- 이에 따라 최상위 조치인 ‘경고문 게재’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조치 통보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관련 부분 개정이 필요한 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추가 조치수단 마련에 노력 중임.

6-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한 명이 안내와 지도, 수사와 고발을 모두 담당하는 조직 및 구조를 개선할 것

- 구·시·군위원회(총 252개)에는 전체 1,952명(2025.6.30.기준)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그중 지도계는 대부분 지도계장과 주무관 1~2인으로 구성·운영되어, 물리적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예방·안내 업무와 조사·조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중대선거범죄 등 대규모 조사건 발생시에는 시·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이 전담하거나 구·시·군위원회 단속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인근 구·시·군위원회 지도계로 구성된 권역 조사팀도 활용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6-2.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조직·인사 개선 추진기구에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할 것

- 우리위원회는 인사·감사 쇄신안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절차 점검에 대한 외부 진단을 위하여 2025년 9월부터 ‘(가칭)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 외부전문가 위주 위원 구성으로 특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
- 한편, 조직 개선 추진기구는 2022년도 양대선거 실시 이후 선거관리 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거관리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을 위해 내부 직원으로 조직개편팀을 구성하여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바 있음.

6-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연임 및 겸직 제한 등)할 것

[연임 제한의 필요성]

- 소속기관 위원 연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소속기관 위원 연임 심사 시 특정인의 재임 기간을 연임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겠음.

[겸직 제한의 필요성]

- 인터넷 선거보도, 여론조사, 방송 분야 전문가가 해당 위원회의 비상근 명예직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나, 특정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임.

[위원 추천권자인 시민단체 선정기준]

- 소속 위원회 구성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라는 것이 해당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이고,
- 해당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특정 단체에 위원 추천권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 자격인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의 기준]

-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인지는 특정인의 직업, 경력, 사회활동, 과거 언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 단체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들의 제출 서류와 공개된 경력·활동 등을 바탕으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해 공정한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음.

6-4.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직전에 휴직을 하는 현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제21대 대통령선거 전 휴직 자제 안내* 실시, 휴직 예정자 사전 파악 등을 통해 종전 대비 선거 직전 휴직자는 감소 추세임.

* 선거를 앞두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 시 타 시·도 복귀 등 사전 예고

※ '22년 제8회 지선 221명 → '24년 제22대 국선 166명 → '25년 제21대 대선 145명

(선거일이 속한 월부터 3개월간 평균 휴직자 수 기준)

- 위원회별 휴직 예정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개경쟁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여 휴직에 따른 선거시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탄력근무제 실시제한 기간 축소 등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6-5.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개방직화 하려는 것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신중히 검토할 것

- 현재 시·도 상임위원의 외부 개방 계획은 없으며, 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시·도상임위원의 역할을 감안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선거 및 정당사무의 전문성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명할 계획임.

7-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겸직허가 실태조사 관련 규정의 도입과 직원들에 대한 겸직현황을 조사할 것

- 감사부서에서 소속 공무원 겸직 실태 조사 및 겸직 관리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2024년 11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하였으며,
- 2025년부터 1월(전년도 12월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말 기준)에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및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음.

7-2.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할 것

-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다중의 정보보호 시스템 [방화벽, 침입 탐지·차단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단말기 위협탐지 및 대응시스템(EDR) 등]을 운영하고, 24시간 365일 통합 보안관제 실시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차단하고 있으며,
- 사이버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서버, 통신망 등 정보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을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ISMS-P, ISO 27001·27701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 정보화 인력 보안 실무교육, 전 직원 대상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과 보안 교육 등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음.

7-3. 선거관리위원회 국외 출장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가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므로 국외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전 출장 보고서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2023년 9월부터 국외출장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출장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음.

〈 개 선 사 항 〉

- 2023년 9월 국외출장 사후검증 제도(결과보고서 심사 및 보고·공개) 도입
- 2024년 연수계획단계부터 심사(국외출장계획서 심사) 도입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2023. 8. 23.)을 통해 대표 홈페이지에 국외출장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음. 다만, 부칙 제2조(보고서 등록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규정 시행 이후 (2023년 9월부터) 국외출장보고서를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